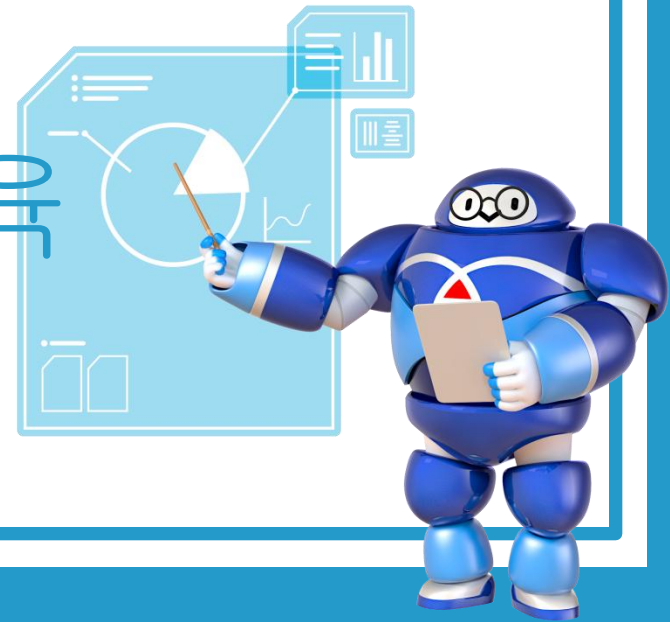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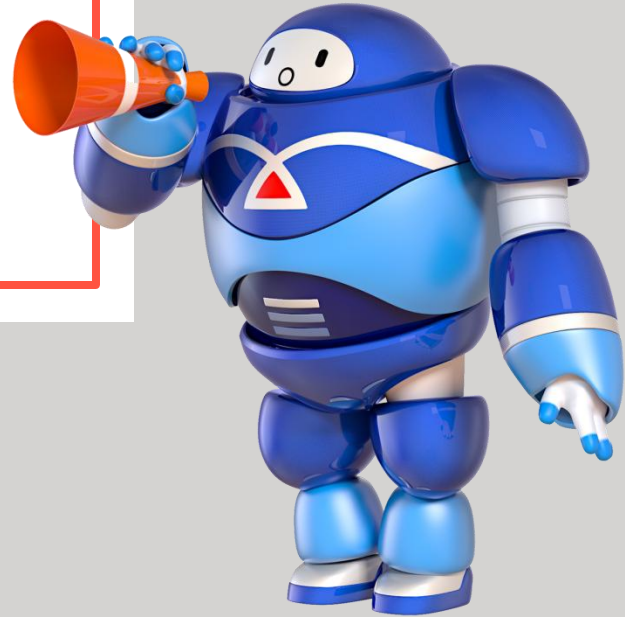
트러스톤 연금포럼

DC가입자 교육

2015.11.20 | IBK기업은행 조영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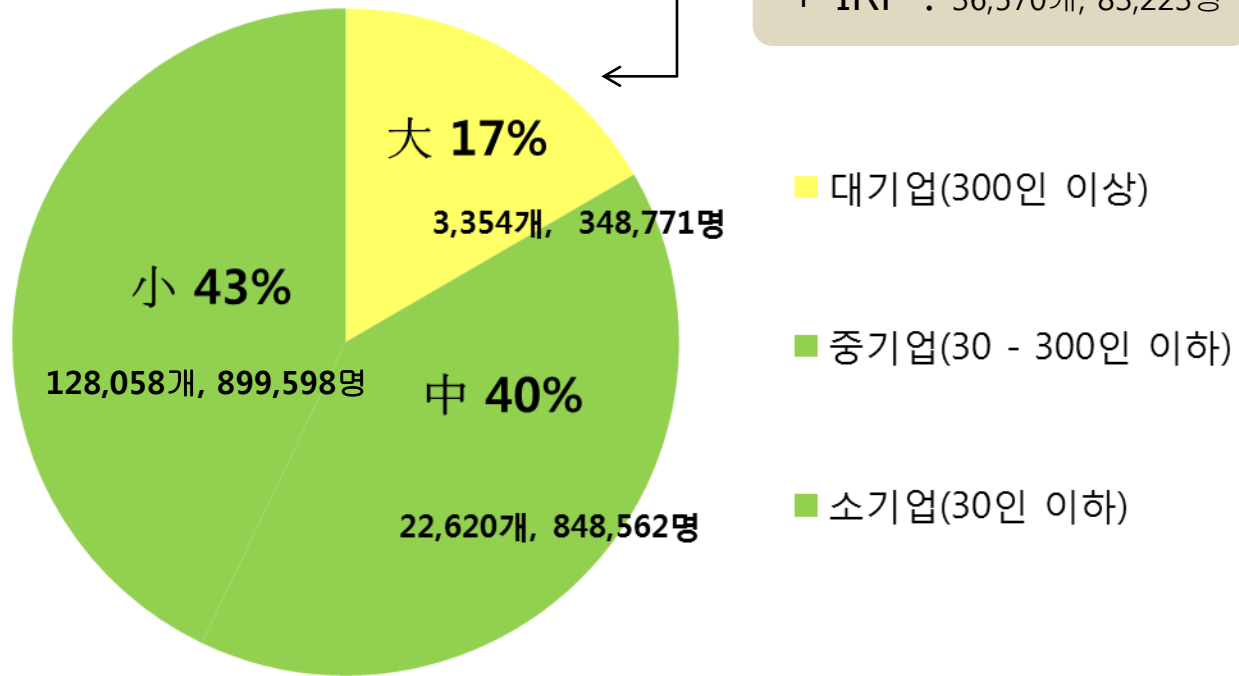
DC가입자교육



01. 교육대상
02. 특성분석
03. 교육화성화를 위한 인프라
04. DC가입자 교육내용의 적정성
05. DC가입자 교육사례
06. DC가입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견

DC, IRP 교육 대상자? - 218만명, 15.4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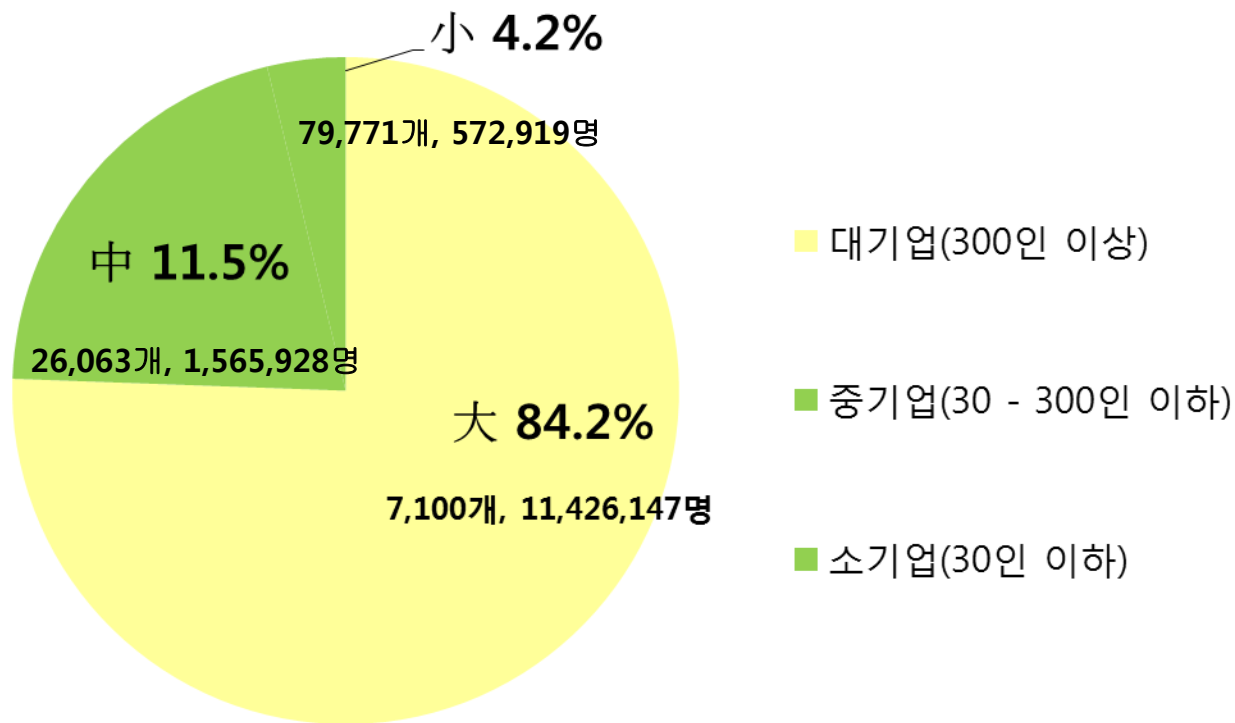
DC 가입자



금융감독원 2015.8월말 기준

DB - 대기업 - 1,140만명, 7,100개

DB가입자



금융감독원 2015.8월말 기준

DC, IRP 가입기업은 많은데 관리는 어렵다.

기업

DB : 112,934개 37.2%

DC : 154,032개 50.75%

근로자

DB : 13,564,994명 76.0%

DC : 2,096,931명 11.75%

DC 기업 수 많고, 근로자는 적다는 의미?

- 사업자 입장 : 일은 많고, 관리도 어렵고, 돈은 안 된다.
(DB는 사업자 11만개, DC는 15만+210만 개인도 관리)
- 기업주 입장 : 대부분이 중소기업, 줄 돈 다 줬다.
- 근로자 입장 : 큰 관심 없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DC, IRP 교육대상자?

DC형 가입자교육 대상은?

DC+IRP

190,602개

218만명

1기업당 평균 11명

IBK

34,800개

339,200명

1기업당 평균 9.7명

大 中 小 기업의 특성분석

구분	기업수	근로자	기업특성	근로자특성	외부환경 (금융기관, 정부)
대기업 공공기관	3,354	348,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노조 有 (이익대변, 교육요청, 서비스요청 등) ● 교육인프라(장소, 시설, 시간배정 등) 매우 우수 ● CEO, CMO등 관심 有 ● 전담자 有 ● 자체교육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및 연금관심도 상 ● 지식(배경지식)수준 상 ● 충분한 재정여건 ● 높은 실행력 ● 능동적, 적극적 ● 20-40대 (적립세대) ● 높은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乙 - 요청하면 언제든지 (DC형 부스, 1:1상담) ● 크로스 세일즈 가능 ● 주요고객 ● 정부정책 적극실행 ● 고급강사파견
중기업	22,620	848,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有 ● 교육인프라(장소, 시설, 시간배정 등) 50% ● CEO, CMO등 관심 중간 ● 전담자 無 ● 자체교육 곤란 ● 퇴직연금 불만급증(수수료, 교육 의무, IFRS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및 연금관심도 상중 ● 지식(배경지식)수준 상중 ● 재정여건 불충분 ● 실행력 미약 ● 중립적태도 ● 30-50대 (적립세대) ● 평균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동등 ● 크로스 세일즈 가능성 있음 ● 고객화 가능성 有 ● 정부정책 무관심 ● 지점자체지원
소기업	164,628 (IRP포함)	982,821 (IRP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無 ● 교육인프라(장소, 시설, 시간배정 등) 불비 ● CEO, CMO등 관심 전무 ● 전담자 無 ● 자체교육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및 연금관심도 하 ● 지식(배경지식)수준 하 ● 재정여건 매우 불충분 ● 실행력 없음 ● 소극적태도 ● 40-60대(인출, 소비세대) ● 낮은 소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甲 ● 크로스 세일즈 가능성 없음 ● 디마케팅 대상 ● 정부정책 무관심 ● 강사지원곤란

大 中 小 교육 가능성? - IBK를 중심으로

구분	기업수	전담자	1인당 관리	대면 교육 한다면?	가능성?
대기업 공공기관	120개	4명	인당 30개	가능(현재도 지원 중)	충분하나, 실제요청 극히 적어(DB)
중소기업	34,680 (VIP 1,500)	일반 : 10명	인당 3,468개	일 3회*20일*12달=720회 지금 수준으로 4.8년 걸려	사실상 불가능 인력 5배는 늘려야 가능
		(영업점 : 600명)	인당 57.8개	교육능력 부족	교육능력 배양한다면 가능성 높아짐
		VIP : 5명	인당 300개	일 2회*150영업일(7.5개월)	요청수요 늘어나는 중

인프라 - 대면 교육을 위한 비용과 인력(IBK)?

현행 : 우편발송

- 건당 300-400원 수준 * 120만명(IBK) = 3.6억원

대면교육으로 바꾼다면?

- 대상 : 34,800
- 방식 : 연회 1회 대면교육
- $34,800 / 12\text{개월} / 20\text{일} / 3\text{회} = 48.3\text{명}$
- 약 50-60명의 교육 전담 인력이 필요
- 인건비 : $50\text{명} * 5\text{천만원} = 25\text{억원} + a = 50\text{억원}$
- **a : 교육자료, 사무실, 복지, 퇴직금, 차량 등 경비

대면 교육을 위한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면?

- $34,800 / 50\text{억원} = 143,678\text{원}$
- 기업당 약 15-20만원의 교육수수료 부담한다면 가능

우편발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하려면 10-20배 수준의 비용추가 소요

교육내용의 적정성?

퇴직연금제도 정의 및 도입장점	1p
퇴직연금도입 필요성	1p
퇴직연금제도 유형	3p
유형별 퇴직금 적립수준	5p
퇴직금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5p
사용자의 부담금	6p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7p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8p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9p
계약이전	9p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10p
안정적 투자 원칙	11p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	13p

교육내용의 적정성?

퇴직연금제도 정의 및 도입장점

01 정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DB형) 또는 근로자(DC형/IRP)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사용하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업이 납입하는 적립금 이외에 개인자금을 적립IRP를 개설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02 도입장점

대한민국 현재 모습은..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 인사관리의 유연성 부족
-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단축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

-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안정적 노후생활자금 확보
- 다층노후소득보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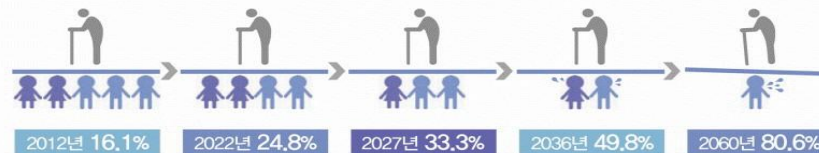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

-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
- 법인세 절감
-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01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후생활 자원 직접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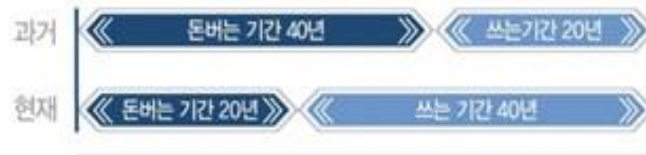
65세 이상 노년부양비율(통계청 정래인구추계자료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부양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자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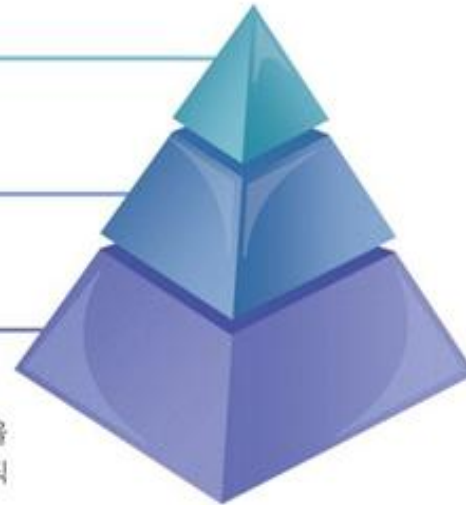
02 급변하는 근로환경

근로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줄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 동안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03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 금융기관에서 운영
- **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 기업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용
-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 국가에서 운영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생활, 퇴직연금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의 적정성?

퇴직연금제도 유형

01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 적립금 수준은 기업이 선택한 운용상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02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적립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별로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교육내용의 적정성?

0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 퇴직금이나 기업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퇴직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04 유형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IRP	개인형IRP
급여종류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요건	연금	퇴직IRP이전 후 수령	· 55세 이상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주)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급여액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적립금 운용 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추가입금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중도인출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2(연금계좌 등)에 의거 2013.3.1일 이전에 가입한 퇴직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0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교육내용의 적정성?

유형별 퇴직금 적립수준

01 확정급여형(DB)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02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총액의 범위 산정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자위저 있는 경우
불포함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퇴직금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의무이전 제외 사유

- 1] 근로자 55세 이후 퇴직
- 2] 근로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
- 3] 총 퇴직금이 150만원 이하

교육내용의 적정성?

사용자의 부담금

01 부담금 수준

부담금 수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시기	매년 1회 이상 _ 노사 합의에 따라 규약에서 정함(납입기간 연장 가능)
부담금 납입현황	· 퇴직연금 가입자 웹사이트(http://pension.ibk.co.kr)에서 확인 · 분기별 발송되는 가입자 운용현황보고서 확인

02 부담금 미납

회사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 비율

-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 10%
- 퇴직일+14일 이후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20%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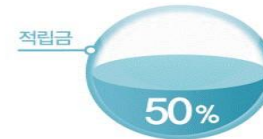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내용의 적정성?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01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 구입 등 법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별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권 실행의 제약 등으로 현재 KB국민은행은 담보대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02 중도인출

퇴직연금 (DB형은 해당 사항 없음) 가입 근로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담보대출 사유와 동일합니다.

중도인출 절차



사유별 첨부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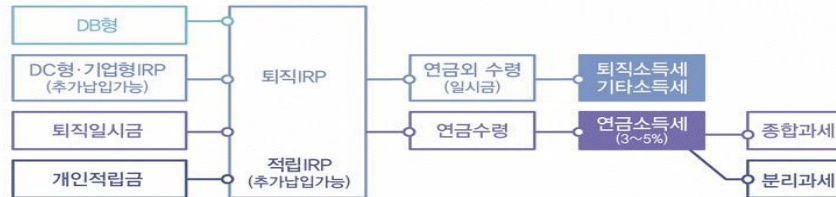
중도인출 사유	첨부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부양가족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파산선고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인가 결정문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중도인출시 과세

- 1 중도인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2 중도인출 이후의 근속년수는 중도인출 이후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교육내용의 적정성?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01 과세체계

퇴직소득 등에 대한 과세체계

퇴직IRP 또는 적립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은 퇴직시 계산된 퇴직소득세, 근로자 추가입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전체금액에 대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상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근로자 추가입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연금소득 등에 대한 과세체계

퇴직IRP 또는 적립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 및 유형	세율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 80세 이후 수령	3%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200만원 초과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02 기타

과세이연에 관한 사항

퇴직금(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징수(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지급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의(일시금)수령하기 전까지 징수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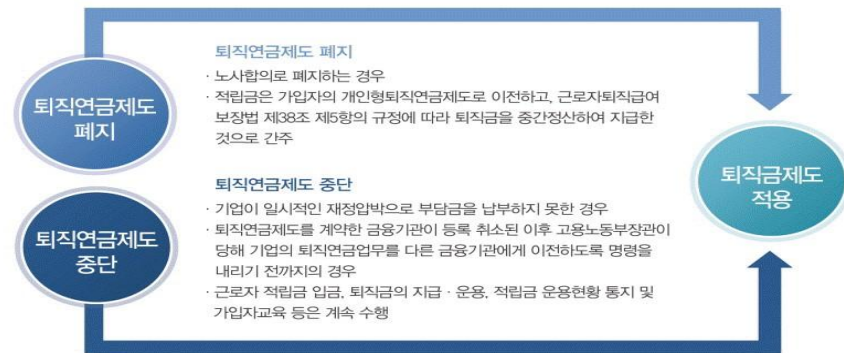
근로자 추가입금 관련 세제

- DC형 및 기업형IRP(연간한도 1,800만원), 적립IRP(연간한도 1,200만원)는 근로자 개인 자금의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추가입금액은 개인연금, DC형 임금, 적립IRP 입금액 등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추가입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전체 운용수익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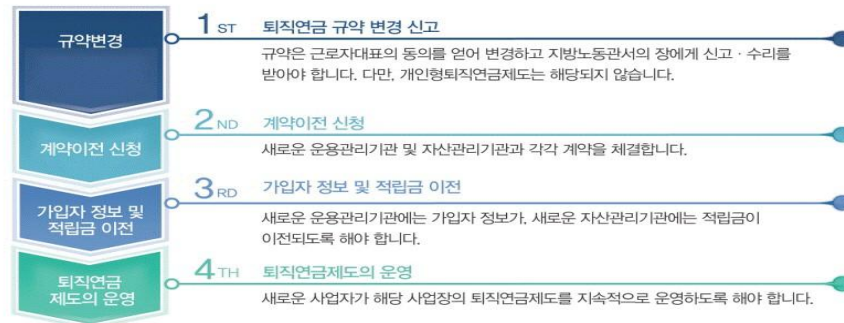
교육내용의 적정성?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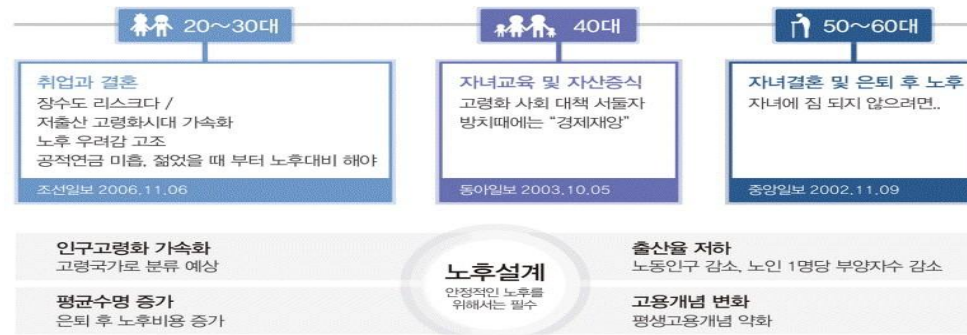
계약이전



교육내용의 적정성?

자산 · 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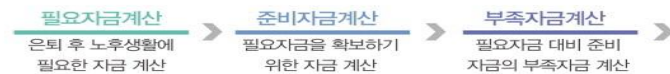
01 배경 및 중요성



02 노후 설계시 고려사항

가족사항	부양해야 할 가족사항
재무사항	현재의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을 파악
필요자금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파악
준비자금	보유자산 및 투자자산을 운용,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부족자금	필요자금-준비자금

03 노후 필요자금 계산 방법



※개인별 필요자금 계산은 <http://pension.ibk.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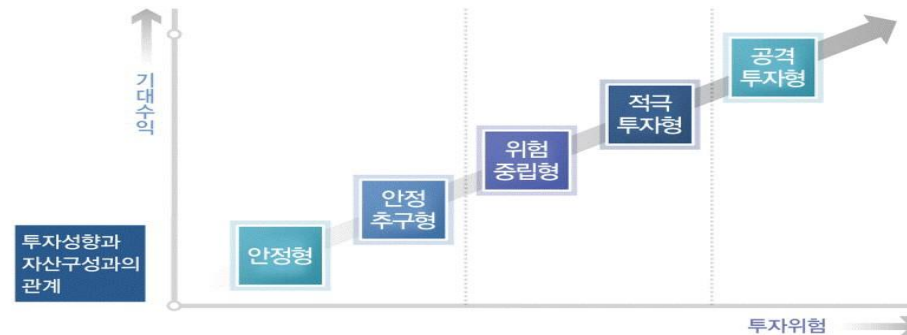
교육내용의 적정성?

안정적 투자 원칙

01 투자성향과 자산구성

- 퇴직연금 자산 구성비율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산을 적절한 운용방법으로 상품비율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원리금보장형상품을 100% 운용하거나, 원리금보장형상품과 투자형상품에 각각 50% 투자하는 등의 방법을 자산 구성비율 또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일반적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 안정형** 예 · 적금이나 일반 채권형 상품으로 안정된 이자를 목표로 가격변동이 적은 상품에 주로 운용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위주로 투자하면서 소극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 안정 추구형** 위험자산을 20% 이하로 운용하는 경우
- 위험중립형** 자본이득과 이자소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그룹으로
주식, 예금, 채권을 각각 30% 정도 운용하는 경우
- 적극 투자형** 자본 이득 추구를 목표로 주식, 해외채권 등 가격변동이 큰 위험자산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 공격 투자형** 자신의 투자자산의 80% 이상을 위험상품인 주식이나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High-Risk, High-Return을 지향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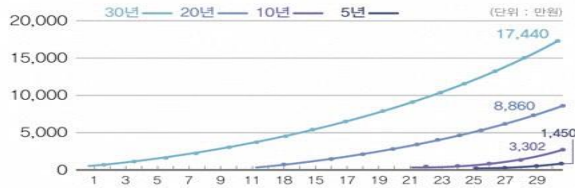
교육내용의 적정성?

02 장기투자란

- ①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최대화하고, 투자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 ② 투자대상에 대해 투자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손실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30년 정도의 기간동안 투자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장기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03 장기투자의 장점

① 복리의 효과로 인한 수익률 증가



가정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매년 250만원 (연간 임금총액 3,000만원의 1/12)이 적립되고 있으며 운용수익률은 5%로 가정

결과

매년 250만원씩 적립한 경우, 투자기간이 5년일 때 1,450만원, 10년일 때 3,302만원, 20년일 때 8,860만원, 30년일 때 17,440만원으로 투자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립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장기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의 감소

가정: 특정 종목의 주가가 1월에 1,000원, 2월에 1,500원, 3월에 1,000원, 4월에 500원으로 변동. 이 종목을 매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의 매입주식수와 평균매입단가를 나타냄

월	주가(1주당)	적립식투자		거치식투자		결과
		매입 금액	매입 주식수	거치식투자	주식수	
1월	1,000원	100,000원	100주	400,000원	400주	주당 857원으로 매입. 5월에 주가가 다시 1,000원으로 회복하여 매도했다면, 이 경우의 거치식 수익률은 0%이지만, 적립식 수익률은 16.5%가 되는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 발생
2월	1,500원	100,000원	66주			
3월	1,000원	100,000원	100주			
4월	500원	100,000원	200주			
합계		400,000원	466주	400,000원	400주	

※ 적립식 투자 수익률 : $(466,000 \div 400,000 - 1) \times 100 = 16.5\%$

※ 거치식 투자 수익률 : $(400,000 \div 400,000 - 1) \times 100 = 0\%$

※ 코스트애버리징 효과(Cost Averaging Effect) : 주로 적립식 투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일정하게 펀드를 매입한다면 가격이 쌀 때 많이 살 수 있고 비쌀 때 적게 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비용이 평균화되는 효과

04 분산투자란

- 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
- ② 분산투자 대상
 - 원리금보장형상품 : 예금 등
 - 실적배당형상품 : 국내외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등

교육내용의 적정성?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

01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가입자께서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

투자 성과가 예상치를 벗어나게 될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

수익

운용상품이 미래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성과 즉, 기대수익을 의미
일반적으로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수익이 낮으면 위험도 낮음

※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때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 모든 투자상품은 투자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와 편입비율 또는 구체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02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

원리금 보장형상품

정기예금
주기연계증권 및 파생연계증권(ELS)
이율보증형 보험(GIC)

실적배당형 상품

주식형 펀드 (주식비중 60% 이상)
주식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50% 이상)
채권혼합형 펀드 (주식비중 40% 이상)
채권형 펀드 (채권비중 100%)

교육내용의 적정성?

	필요성		
퇴직연금제도 정의 및 도입장점	도입	X	1p
퇴직연금도입 필요성	도입	X	1p
퇴직연금제도 유형	도입	X	3p
유형별 퇴직금 적립수준	도입	X	5p
퇴직금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지급	X	
사용자의 부담금	운용	X	6p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운용	O	7p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	지급	X	8p
퇴직연금제도 중단 또는 폐지	운용	X	9p
계약이전	운용	X	9p
자산·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운용	O	10p
안정적 투자 원칙	운용	O	11p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	운용	O	13p

1. 교육내용에 내 정보는 없다.
2. 한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교육한다.
3. 필요 없는 내용도 너무 많다.
4. 적립금 운용 등 중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한다.
5. 교육내용을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이 좋은가?
6. 사업자는 아무런 교육효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 내 정보를 알고 싶다
- 내 노후를 설계하고 싶다
-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고 싶다
- 국민, 퇴직, 개인 종합컨설팅

교육내용의 적정성?

투자능력을 교육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현재상황)

: 대기업, 공공기관 - 지식수준 높음 - DB형

: 중소기업 - 지식수준 낮음 - DC형

투자교육 통해 능력 배양해도 대다수의 무관심한 인원 구제방법 필요
투자지식과 투자실행력은 전혀 다른 문제
펀드에 대한 불신, 상품선정과 관리에 대한 불편함.

- 대표상품제, 디폴트옵션 : 투자교육을 대표상품제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현실적
(전제 : 대표상품제의 안정적 수익률확보)

교육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제공자

사업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시스템

Web , app, 기타

자산관리지원

노후 설계

210만명의 자산관리, 노후설계 등 교육의 핵심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투자 교육 통해 투자이해도, 실행력 얼마나 높일 수 있나?

- 학력차, 정보의 비 대칭성, 운용실패에 대한 책임과 한계

DC교육사례 - IBK를 중심으로

법적의무 교육형

-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해야 하는 지역대표기업들, 공공기관, 병원, 요양시설 등.
(기업 협조 우수, 근로자 관심도는 중간)

자산관리 교육형

- 자산운용에 대한 구체적 컨설팅 및 사례중심, 기업의 CEO, CFO가 일단 관심이 깊은 기업이 주 대상
- 펀드변경 등 투자상품 위주의 교육 (기업협조 우수, 근로자 관심 높은 수준)

은퇴설계 교육형

-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은퇴설계와 병행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대기업 및 공공기관,
- 사업자 가장 큰 부담, 2박 3일 등 코스도 다양(기업협조 우수, 관심도 높으나 퇴직자 중심의 교육)

DC부스형

- 상품운용지시 및 상품에 대한 개인적 1:1 컨설팅, 대기업(금융기관) 및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견

1. KING PIN

- 임원퇴직금컨설팅, 임원자산운용 컨설팅 + 가입자교육

2. Double Track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적의무 교육사항) + 가입자교육(사례교육)

3. Fun & Fun

- 영화세미나 + 자산관리교육

4. 교육 수수료 유료화 필요

- IFRS처럼 교육 수수료 유료화하고 & 법정 대면교육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5. 교육기관(NPO, FP회사, 연금전문교육기관 등) 설립

- 재원 : 기업당 20만원 / 인력 : 퇴직 지점장, 금융기관경력자, FC

6. 기업 스스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및 교육전문가 채용

- DC가입자교육의 주체는 기업, 전문가 채용해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 제공해야
- 300인 이상 기업 : 의무채용, 30인 - 300인 : 기관파견(유상), 30인 이하(정부-무상)

7. 정부의 입법정책지원

- 3대 연금(국민, 퇴직, 개인연금) 정보 기관통합지원 - 소득대체율 산정, 대안상품 자동 추천

- 교육내용 자율화 : 연령별 교육내용 차별화, 도입, 운용, 지급에 따른 내용 다양화

소견

8. 콘텐츠 및 시스템 정비

- 콘텐츠 개발은 연금전문가 + 교육전문가 + 콘텐츠 전문가 합동개발 : FUN & EASY & MY INFO
- 시스템은 ICT기업과 CO-WORK
- 정보 접근성 획기적으로 개선 (이메일 또는 아이디 하나로 접근 가능하도록 - 미국401K접근 방식)
-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 및 시스템 개선해야.

9. 자산운용중심의 DC교육으로 전환

- 자산운용사 참여 높여 자산운용 전문성 높여야.
- 자산전문 컨설턴트, pb가 실행의 중심에 서야.

10. 노조,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의 역할 강화

- 다양한 이익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11. Underpinning arrangement : 투자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연금액을 보장하는 제도

- 기업의 상품제공의무 부여 :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중 기업의 필터링을 거친 상품제공의무 부여
- 기업의 책임강조, 최소한의 보장장치 마련

Thank you

감사합니다.

